

# NEWSLETTER 953

Mar 05, 2024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61호)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및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II. 개정 내용

#### 1. 환급 가산금 이자율 조정 (제9조의3)

○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 연 1천분의 35를 -----.

#### 2. 우회덤핑방지제도 고려 요소 규정 (제12조)

○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존용**함.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p> <p>②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p> <p>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p> <p>② 2.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종물품-----</p> <p>③----- -----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p>
<p>〈신 설〉</p>	<p>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 요소) 영 제71조의2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li> <li>2.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li> <li>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li> <li>4.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 설비 차이</li> <li>5.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li> <li>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li> </ol>
<p>〈신 설〉</p>	<p>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등)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철회, 비밀취급자료,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p> <p>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1항”은 “영 제71조의8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호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는 “해당 조사”로 보며, 제15조 본문 중 “영 제64조제2항”은 “영 제71조의9제1항 및 제3항”으로 보고, 제15조의</p>

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영 제64조제5항”은 각각 “영 제71조의9제1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는 “영 제71조의11제2항 제2호”로 본다.

### 3.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 기간 연장 (제68조의2)

-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② (생략)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3년 12월 31일----- ----- -----

### 4.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규정 구체화 (제73조의3)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제6조 후단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운송

가능하다.)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물품

### 5.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제78조)

○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현 행	개 정 안
제78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 수수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6.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수수료 신설 (제 88조)

○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8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8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에 따른다.

##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처벌 세부기준 신설 (제89조)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9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8. 관세 면제 대상 추가 (별표2 제2호나목 13)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트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 I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4년 3월 13일 까지

###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혹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urim821@korea.kr](mailto:yurim821@korea.kr)
- 팩스 : 044-215-8075

### 3.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61호)
- [붙임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Contact



양다운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 Senior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